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94 발의연월일: 2024. 11. 12.

발 의 자:최형두·조인철·윤한홍

김소희 · 서천호 · 강승규

이종욱 · 김종양 · 허성무

김미애 • 이양수 • 서일준

유영석 • 신성범 • 최보유

김예지 • 유상범 • 조정훈

주호영 · 김상훈 · 서범수

조은희 · 김태호 · 박정하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사업자가 준공한 이동통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이하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라 함)하여 전파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전파 혼신·간섭으로부터 무선국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전파를 활용한 이동통신 서비스가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매년 수만 개의 이동통신 무선국이 준공됨에 따라, 증가하는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로 인해 사업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신속한 최첨단 ICT 서비스 도입·확산에도 일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 신 사업자에 대해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 로 시험·확인하고 그 결과(자기적합확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며, 사업자가 자기적 합확인서를 부정하게 작성·제출하면 행정처분 등을 받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66조의3, 제69조, 제72조 및 제90조).

한편,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함)를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받아야 하며,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폐기한 중앙행정기관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또한, 전파차단장치를도입한 국가기관 등은 공공안전 위협 수단(불법드론·폭발물 등)을 대상으로만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수출용 전파차단장치는 해외에서 사용되어 국내에서 전파 혼신을 유발하지 않음에도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조 인가를 받아야 제조가 가능해 수출 기업은 불필요한 인가를 받아야함. 또한, 현행법은 전파차단장치 도입·폐기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이아닌 기관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차단장치 도입·폐기 사실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기관등에게 인가한 전파차단장치의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국가기관 등이 교육·훈련·장비정비등의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불법드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국내 사용에 필요한 인가를 면제하고,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폐기한 모든 기관에 대해 전파차단장치 도입·폐기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인가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사후 관리를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 등으로 하여금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장비정비 계획을 사전 신고하면 해당 목적에 따른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71조의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1항·제4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 (이하 "무선국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이하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의2제2항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 제5항"을 "제1항 · 제2항 · 제5항 · 제6항"으로 한다.

제29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활동 또는 조치를 위한 교

육, 훈련, 장비정비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려는 자는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계획이 이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을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를하"로, "중앙행정기관의"를 "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제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에 대하여는 인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 제7항에 따른 인가와 인가의 면제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3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수수료

제69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갈음하는 자

제71조의2제5항 중 "자에게"를 "자,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는 자에게"

로 한다.

제72조제2항제3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2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3을 제4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의4(종전의 제4호의3)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을 "제24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4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 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제78조제2항 중 "제2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제24조제1항·제2 항·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호 중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을 "제24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90조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 여 제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파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혂 행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 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 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허 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제24조제 2. 무선국 개설허가는 제24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검사증명 4항 -----서를 발급받은 날. 다만, 제2 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그 허 가를 받은 날로 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검사) ① (생 략) 제24조(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신 설> 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시설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 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 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이하 "무선국자기적합확인"이라 한

다)하고, 그 결과(이하 "무선국

②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제5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하면 지체 없이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한 결과가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underline{4} \cdot \underline{5}$ (생 략)

⑦·⑧ (생 략)

⑨ 제1항・제4항・제5항 및 제
8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시기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기적합확인서"라 한다)를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
출하여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u>4</u>
제6항
<u>.</u>
<u>⑤</u> ・ <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⑦·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제2항·제5항·제6
<u>항</u>

-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①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① (생 략)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 기검사 시기에 외국을 항행 중 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 국.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 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 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① ~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① ~ ③ (생략)

<신 설>

<신 설>

(현행과 같음)
②
제24조제5항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그 활동 또는 조치를 위한 교육, 훈련, 장비정비 또 는 시험을 목적으로 전파차단 장치를 사용하려는 자는 전파 차단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위 한 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계 획이 이 법에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수

- ④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이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전파차단장치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u>⑥</u> (생 략)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와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u> </u>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
동 또는 조치를 하
기관
<u>o</u>
<u>⑦</u>
<u>다만, 국내에서</u>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
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제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에 대하여는 인가
를 면제할 수 있다.
<u>⑧</u> (현행 제6항과 같음)
<u><삭 제></u>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
른 신고, 제7항에 따른 인가와

리하고 그 사신은 시고이에게

제66조의3(진흥원의 운영경비 제66조의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①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 등) ① -----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충당한다.

- 1. 삭 제
- 2. (생략)

<신 설>

- 3. ~ 5. (생략)
- ② (생략)

제6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제69조(수수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3. (생략) <신 설>

4. 삭 제

5. ~ 6. (생략)

② (생략)

④ (생략)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⑤ -----

인가의	면제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	으로
<u> 정한다.</u>				

- 2. (현행과 같음)
- 2의2. 제6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수수료
- 3. ~ 5.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 공검사를 갈음하는 자
- 5. ~ 6.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① ~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① ~
 - ④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자, 제조·수입 ·판매·대여하는 자,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 망에 설치하는 <u>자에게</u> 개선· 시정·수거·철거·파기 또는 생산중지·수입중지·판매중지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 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생략)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조 등) ①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유정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

<u>자, 전파차단장치를</u>
사용하는 자에게
⑥ (현행과 같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취소 또는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 설>

3.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의 하가증 또는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혀있는 준공기한(제24조제2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4.・4의2. (생략)

4의3.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 25조제3항 단서(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검 사기관의 사정으로 발생한 지연 일수는 검사기간 산정 에서 제외한다)까지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

1. • 2. (현행과 같음)
3
<u>제24조</u> 제3항
<u>√∥ეფ</u>
4.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
를 제출한 경우
<u>4의4</u> . <u>제24조제4항</u>

신청 후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 5. <u>제24조제4항 및 제5항</u>(제58 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6. ~ 20. (생략)
- ③ ~ ⑤ (생 략)
- 제7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 제7조의2, 제18조, 제2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의2제1항 (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58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9조 및 제7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협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있다.

5. <u>제24조제5항 및 제6항</u>
6. ~ 20.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24</u>
<u>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u>
<u> 항</u>

- ③ ④ (생 략)
-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 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측정・조사・시험 또는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의2. · 2. 삭 제 3. ~ 6. (생 략)

제9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 저는 그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 략) <신 설>

<u>2의2.</u> (생략) 3. ~ 6.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fl86조(벌칙)
1. 제24조제5항 및 제6항
3. ~ 6. (현행과 같음)
네90조(과태료)
90年(年月五)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
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거짓
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u>2의3</u> .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3. ~ 6. (현행과 같음)